

정 관

학교법인 경영교육재단

학교법인 경영교육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새 역사의 개척이라는 창학이념에 입각하여 고등 직업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학교법인 경영교육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경북전문대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7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 ②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기부 받는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 기증재산의 실질적 재산가치 및 활용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과실
- 2.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 3. 그 밖의 수입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대학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편성,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 ③ 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대학의 장이 편성, 대학평의위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대학의 장이 집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되 대학이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사항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
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 제17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8 명(이사장 1명 포함)
2. 감 사 2 명
3. <삭제>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견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은 대학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 사항으로 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 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감사는 단수 추천)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삭제>

제20조의3(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2.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 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다른 감사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서 민법 제777조가 정하는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2.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사람

⑦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에 있어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관련 법령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재산을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장으로서 이사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이 법인의 직원,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대학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다만, 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함)
 6. 법인이 설치한 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는 [별표3]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대학의 장의 선임과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장경영

2. 부동산 임대업

3. 조경사업

4. 유통사업

5. 교육서비스업

6. <삭제>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경영교육재단농장 또는 기타 사업소를 경영할 수 있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7에 둔다.

② 수익사업체의 목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무소의 주소를 변경, 관할 세무서에 등록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의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2(기록물관리 등) ① 사립학교법 등 법령이 정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학적부

2. 조직 · 회계 · 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 이 법인의 해산인가 · 해산명령이나 대학의 폐지인가 ·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거나 또는 이 법인의 취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그 귀속 시기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로 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강사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한다.

1. 계약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이 교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 조교수 :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 강사,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마. <삭제>

2. 보수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3. 복무 : 교육관련 법령·법인정관·대학의 장이 정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와 자질향상 및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학생선발, 교육활동(연구), 학생지도, 취업활동, 산학협력 등의 영역의 업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5. 재임용의 조건, 절차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특임교수 및 초빙교수, 겸임교원, 강사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위촉 또는 임용한다.

⑤ 부총장, 처장, 실장, 부처장 및 부실장, 대학부속기관장 및 학과(부)장은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⑧ <삭제>

⑨ <삭제>

제39조의2(신규채용)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공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교수로서의 자격여부, 전공일치도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학문적 우수성, 전공분야의 산업체경력 및 교육경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인격과 품위, 언어구사와 표현능력,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 학생 지도에 임할 자세 및 교육자(연구자)로서의 발전가능성 등의 심사

③ 제2항 제2호의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의3(승진임용) ① 교원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승진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실시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삭제>

제39조의4(재임용) ① 대학의 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호 내지 7호 <삭제>

② 제1항에 의해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중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의5(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는 대학의 장이 정한 제2항의 정년보장임용심사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활동(연구), 학생지도, 취업활동, 산학협력 및 기타 대학발전기여도 등을 심사한다.
- ④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20%이내로 한다.

제39조의6(특별채용) 대학의 장은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호 내지 4호 <삭제>

제39조의7(업적평가) ① 대학의 장은 매년 전임교원에 대하여 학생선발, 교육활동(연구), 학생지도, 취업활동, 산학협력 등의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 ② 대학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③ 업적평가의 결과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 연봉책정, 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기타 등의 사유로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③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④ 강사는 휴직을 하여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휴직한 달의 강의 분에 대한 강사료는 실제 강의한 시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해당교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있는 휴직기간만 보수의 8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제18조 등을 준용한다.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하게 된 경우 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40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1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39조(임용)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임용권자는 제40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44조(면직 및 직위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제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⑨ <삭제>

⑩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에 따라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5조(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보수의 지급방법 및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와 교과과정의 개폐, 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시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제46조의2(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되, 대학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46조의3(명예퇴직 등)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퇴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직을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의4(교원의 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하거나 당해 학년도에 정년퇴임하는 때.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때
- ② 전항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되는 교원의 직급은 대학의 장이 정하며, 이 경우 교수로 특별승진임용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47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강사의 임면(징계에 의한 파면과 해임의 경우 제외)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구학기, 산업체연수, 교환교류대상자 등 추천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5.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 기여도와 참여도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5명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업교육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궐위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또는 대학의 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및 결원의 발생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위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여 시킨다.

제59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② 성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교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65조 ~ 제78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79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인 경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각 호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0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정규직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한다.

제81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학의 장이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2(직무역량평가) ① 대학의 장은 매년 직원에 대하여 직급역량과 공통역량 등의 직무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대학의 장은 직무역량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③ 직무역량평가의 결과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 연봉책정, 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책정하여 통보한다. 단, 계약직 직원은 총장이 책정한다.

② 보수의 지급방법 및 내용은 정관 제4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3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대학의 장이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3조의3(명예퇴직)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② 직원의 임용권자가 재심청구 및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직원은 대학 교직원으로 겸보하거나 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직 및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정한다.

③ 법인사무처에 겸보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겸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대학 보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전문대학

제86조(총장 등) ① 대학에는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학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에 필요한 수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사고 시에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 2명 이상이거나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이 미리 지정한 부총장 또는 교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총장은 대학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 이행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87조(하부조직) ① 대학에는 직업교육처, 입학지원처, 기획조정처, 경영지원처, 학생통합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대학에는 각 부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처장, 단장, 실장, 센터장

등의 보직자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보한다.

③ 하부조직의 장과 이를 보좌하기 위한 부처장·부실장·부단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조직에는 과, 센터(원), 실 등을 둘 수 있으며,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거나 정규직 또는 계약제 직원으로 보한다.

제87조의2(산학협력단) ①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학의 장이 보하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학 소속 교직원의 파견에 대한 결정과 임명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산학협력단의 정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88조(직속, 부속·부설기관) ① 대학의 직속기관으로 제301학생군사교육단, 국방대외협력실, 부속실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속·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지원센터, 도서관, 생활관, 요양보호사교육원, 현암철도아카데미, 신문방송국, 체육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직속·부속·부설기관 등에 각각 장을 두며,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거나, 정규직 또는 계약제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301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군에서 추천한 인사로 보한다.

③ 직속·부속·부설기관 등의 장은 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기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삭제>

제89조(대학인권센터) 대학에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학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90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제91조(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4명

3. 학생 1명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대학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④ 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 되며,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2조(대학평의회 의장 등) ① 대학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교내 평의원의 위촉) ①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평의원의 위촉은 각 구성단위 별로 2배수 추천을 받아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91조 제1항 제3호의 평의원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

③ 제9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은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

④ 보궐평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제외하고는 기추천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4조(대학평의회의 소집)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장이 정관 제95조의 각 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95조(대학평의회의 기능)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6조(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 4 절 정 원

제97조(정원) 법인 및 대학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9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한다.

제9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최석채	1917.11.21	4년	서울시 서대문구 용암동 산 1-4
이사	최현우	1927.08.20	4년	대구시 동구 신천동 901
이사	김계원	1923.06.28	4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19-25
이사	조환	1933.10.13	2년	대구시 동구 중동 486
이사	김형근	1928.07.13	2년	경북 영주군 영주읍 영주리 3-2
감사	홍영선	1928.09.10	2년	대구시 남구 대명동 2380
감사	이정희	1903.12.09	1년	경북 영주군 영주읍 휴천리 9-1

제 9 장 청렴의무 등

제101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2조(행동강령 등) 제101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법인 또는 대학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196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 계약된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이 정관의 임용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 ③ (교원 및 일반직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임용계약기간중에 있는 교원과 일반직원의 보수는 연봉제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2001.12.31)」을 준용하

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교수는 1차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가 교수 : 정년.(1차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년.

라. 전임강사 : 2년.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 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기간의 제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 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종료일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7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의 승진임용기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39조의3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30부터 시행한다.

② 제85조, 제86조의2,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6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직원 정원

총 계	3 명
1. 일반직계	3 명
(1) 5 급(부참사)	1 명
(2) 7 급(부주사)	1 명
(3) 9 급(부서기)	1 명
2. 학 제	
(1) 학 제	
(2) 학 제	

(별표2)

경북전문대학교 직원 정원

총 계	85 명
1. 일반직계	48 명
(1) 학 제	
(2) 학 제	
(3) 4 급(참 사)	1 명
(4) 5 급(부참사)	7 명
(5) 6 급(주 사)	10 명
(6) 7 급(부주사)	13 명
(7) 8 급(서 기)	6 명

(8) 9 급(부서기)

11 명

2.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3. 기능직계

20 명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10 급

20 명

4. 전문직계

8 명

(1) 6 급

1 명

(2) 7 급

1 명

(3) 8 급

2 명

(4) 9 급

4 명

5. 기술직계

9 명

(1) 5 급

1 명

(2) 6 급

1 명

(3) 7 급

2 명

(4) 8 급

2 명

(5) 9 급

3 명

(별표3)

법인 이사회 수당 등

구분	출석방법	수당	비고
이사, 감사	직접출석	300,000원	회의수당 + 교통비
	원격출석	200,000원	회의수당